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5년 11월 7일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 41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25.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2025년 11월 18일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24.)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25. 11. 27.)는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고도화된 시나리오, AI·딥페이크 기술 등 IT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수단인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

금융권은 자체적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하여 사기 의심계좌 신속 정지, 피해자 문진·확인 등을 실시 중이나, 금융회사 별 정보력·분석역량 편차로 인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단일한 공유 채널 부재로 인해 개별 금융회사가 탐지한 사기 관련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상호간에 공유·전파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금융·통신·수사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

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기관련의심계좌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호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피해금의 입금·이체·송금·인출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또는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정의함.

나.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설치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규정함.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사기정보제공기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대응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다.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3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자체 분석·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기정보이용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안 제13조의4제5항 및 제7항 신설)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관련 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개별법상 정보보호 규정 관련 특례(안 제13조의4제6항 신설)

관련 정보 처리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정보보호 관련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기관련의심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피해금의 입금·이체·송금·인출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나.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①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1. 피해발생계좌(피해자의 계좌로서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말한다), 사기이용계좌 및 사기관련의심계좌와 그 계좌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번호·단말기기·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및 그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매체·수단에 관한 정보(이하 이 호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를 수집하는 데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이를 통해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 중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생성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④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

고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또는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8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⑦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2. 제공받은 정보가 제공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것
3. 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및 개인·신용·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사기관련의심계좌</u> ”란 <u>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u> <u>가. 피해금의 입금·이체·송금·인출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u> <u>나.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u> 제13조의4(<u>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u>) ① <u>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u>
<u><신 설></u>	

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1. 피해발생계좌(피해자의 계좌로서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말한다), 사기이용계좌 및 사기 관련의심계좌와 그 계좌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번호·단말기기·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및 그 이용자에 관

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전
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접근매체 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
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매
체·수단에 관한 정보(이하
이 호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를 수집하는 데 이용되
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
는 인터넷홈페이지, 응용프로
그램,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
ication) 및 이를 통해 개인
정보등이 유출된 자(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 중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생성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④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한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
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
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
유식별정보(같은 법 제24조의2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한다)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
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처
리에 관하여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 훼손
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
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또
는 그 밖의 위협에 대하여 안
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⑥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

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8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⑦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2. 제공받은 정보가 제공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것

3. 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및 개인·신용·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 정보 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